이주여성용

이런건, 궁금해요

–문답으로 풀어보는 한국생활법률 정보

생활법률정보-진짜.q 2006.1.14 1:3 PM 페이지3

이주여성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한 이주여성이 토해내는 말입니다. 한국생활에 궁금한 것은 많은데,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주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과 생활정보를 모아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민결혼 중 8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라고 합니다. 국적도 다양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러시아….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민족, 다인종시대에 접어든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무시 등 인권문제로, 한국어를 모르는데서 오는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의 차이에

서 오는 갈등문제로 한국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가 절대빈곤층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어렵답니다. 자녀들 통합과 교육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어려움에 부닥쳐도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학대에 직면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남편에게 학대를 당해도 체류자격을 남편이 보증해야 하니 남편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이주여성에게 없으면 체류자격이 주어진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다고 궁금증을 풀어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주여성을 만나다 보면 이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 와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생활법률매뉴얼 ”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여성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문답형식으로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가족과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성과 가족문제, 알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체류관리의 문제,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한국의 여성보호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나 생활 안내 등,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매뉴얼 내용 중 체류에 대한 것은 2005년 9월 25일자로 발표된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또 제한

된 지면상 최소한의 내용만 실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의기투합해서 함께 기획하고 워크숍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 준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책기획팀장 김엘리 님, 법률전문위원 임선영 변호사님과 공익변호사그룹 ' 공감 '의 소라미 변호사님, 자문을 해주신 전문상담위원 김상임 님과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삽화를 그려주신 강민정 님, 자국어 번역에 혼신을 기울여 주신 원옥금(베트남어)님, 바트(몽골어)님, 그리고 이 매뉴얼을 예쁜 책으로 편집해 준 누리미디어플러스,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매뉴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2005년 12월 18일

이주민의 날에

목차

| 참, 궁금했어요 : 성과 가족

1. 참 좋은 결혼생활을 위해 알아야할 결혼의 실제
   1) 결혼과정 살펴보기
   2) 나에게 결혼이란

2. 한국가족과 문화, 얼마나 알고 있나요?
   1) 남편과 한국가족에 대하여
   2) 한국생활양식에 대하여
   3) 도움이 필요할 때

3. 이주여성들이 갸우뚱하는 일곱가지
   1) 나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딸린 가족이?
   2) 무뚝뚝한 이 남자, 한국남자는 다 그런가요?
   3) 남편은 하늘이래요.
   4)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들어요.
   5) 나도 가족인데…
   6) 섹스는 대화, 여자도 느껴요.
   7) 술 나빠요! 남편은 술을 사랑해요.

(1) 사람과 소통하는 법
(2)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상하는 법
(3) 구타당할 때, 대응법

4. 내 삶은 내가 : 한국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 ····· 32

II 알면, 안전해요: 체류관리

1. 국제결혼과 체류 ····· 34
2. 국제결혼과 국적 ····· 39
3. 국제결혼과 기타 ····· 47
4. 이혼시 체류국적 문제 ····· 49

III 아~니, 이런 법도!! : 여성보호법

1. 가정폭력 대처방안 ····· 56
2. 성폭력 대처방안 ····· 67
3. 성매매 대처방안 ····· 74

IV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복지서비스

1. 건강의료보험 ····· 81
2. 모자보건 & 보육사업 ····· 85
3. 모성보호 & 고용보험 ····· 89

[부록] 전화번호안내 ····· 94
이주여성활동단체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가출신고 & 수배해지 담당기관
긴급전화안내
의료기관 & 알코올상담센터

I 참, 궁금했어요

1. 참 좋은 결혼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결혼의 실제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남자와 함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결혼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결혼과정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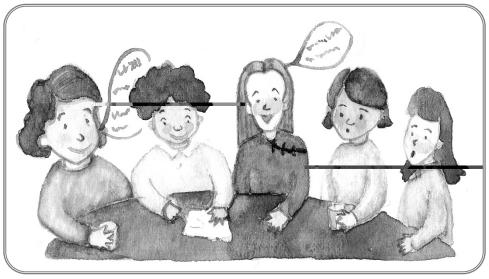

"결혼중매업체는 남편이 될 사람은 선량하고 부자이고,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다고 했어. 남편은 나의 가족들에게 매달 300달러를 송금하기로 했지. 한국에 가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약속했었어. 근데 한국에 오니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어." (30세, 여성)

"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었어. 생각해보니 남편 신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별로 물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지 얘기해 보지 않고 결혼했어." (21세, 여성)

(1) 내 남편이 될 남자, 어떤 사람일까? 정확한 정보 확인하기

위의 이야기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겪는 일입니다. 흔한 일이죠. 그러니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남편의 직업, 경제 상태, 학력, 성격, 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펴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결혼하기 전,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아셨나요?

(2) 남편 가족, 누가누가 있나 알아보기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전통적으로 남편의 집안에 들어가서 남편의 가족들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집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 않는다 해도 시집식구는 여성들에게 주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남편 가족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봐야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시집가족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3) 중매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똑바로 알기

결혼은 남녀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남성이 중매업체를 통해서 외국여성과 결혼할 때, 한국남성이 소개비용을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불합니다. 문제는 결혼 후, 부부갈등이 생겼거나 고부갈등이 생겼을 때, 이 비용을 여성에게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많은 외국여성들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결혼생활을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신중히 판단해야겠지요.

(4)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요청하기

중매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이 3 4일 동안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래서 남편과 한국문화에 대해 알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중매업체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한다면, 중매업체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해야겠지요. 많은 여성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프로그램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었나요?

(5) 음, 누가 멋있나? 내가 남편 직접 고르기

대부분의 중매업체는 여성들을 줄서게 하고, 한국남성들로 하여금 맘에 드는 여성을 지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남성과 결혼할 때, 여성들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성이 선택하고 중매업체가 강하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그리고 여성도 남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현실적인 조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행복한 결혼을 위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변사람이나 여성단체와 함께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나에게 결혼이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멋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지요. 여기서 고생하느니, 한국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맘으로 한국에 옵니다. ' 한국에 가서 뭐든 하면 되

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결혼생활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나요? ' 그냥 부딪히면 되겠지 라고 조금 가벼이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자,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 남편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무엇일까?
-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 내가 살아온 곳과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각오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는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각오는?
- 내가 하는 결혼의 의미는?

2. 한국가족과 문화, 얼마나 알고 있나요?

▣ O/X 퀴즈

*아래 문항을 읽고, □ 안에 알면 O표, 모르면 X표 하세요.

1) 나의 남편과 한국가족에 대하여

□ 1. 나는 남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
□ 2. 나는 시부모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
□ 3. 나는 남편의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
□ 4. 나는 시집가족들의 생일날을 기억한다.

□ 5. 나의 남편은 내 부모의 이름을 정확히 안다.

2) 한국생활양식에 대하여

□ 6. 한국말은 높임말이 있다.
□ 7.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다
□ 8. 밥상을 차릴 때, 숟가락은 젓가락의 왼편, 젓가락은 숟가락의 오른편에 놓는다.
□ 9.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이며,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날이다.
□ 10. 추석은 큰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날이다.
□ 11. 남성중심의 가족문화가 강하다.
□ 12. 나이와 성에 따라 위계질서가 잡힌다.
□ 13. 시부모가 바깥출입을 할 때는 인사를 한다.
□ 14. 출산 후, 산모는 미역국을 먹는다.

3) 도움이 필요할 때

□ 15. 여권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6.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연락할 전화번호를 안다.
□ 17. 화재나 응급이 발생했을 때 119로 전화한다.
□ 18.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1366으로 전화한다.
□ 19. 성매매 신고를 하여 성산업 피해 여성을 돕는 긴급 전화번호는 1170이다.
□ 20.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돕는 여성단체를 최소한 하나는 알고 있다.

▣ 계산하기

* 1개에 5점씩 계산합니다. 20개 문항 중 10개를 안다면 10×5해서 50점이 됩니다(20문항×5점=100점).

- 90점 이상 : 와~ 그대는 완벽한 수준
- 85~75점 : 많이 알고 있네요. 조그만 더 세밀하게 공부하면 놀라운 수준!!
- 70~50점 : 제법 아는데요! 근데 조금만 더 노력하자구요.
- 50점 이하 : 음… 공부 좀 해야겠네요. 아자!

▣ 설명하기

■ 수저사용 : 한국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 온돌방문화 : 한국주택은 온돌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자보다는 바닥에 앉는 문화이고, 한국인들은 찜질방이나 불가마와 같은 뜨거운 기운을 좋아합니다. 여름철이라고 해도 산후조리나 유아를 돌볼 때 따스한 온돌을 선호합니다.

■ 신발을 벗는 문화 :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모자도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 목욕탕 : 한국은 개별적 목욕시설을 갖춘 집이 많으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끼리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 가부장적 부계중심사회 : 한국사회는 부계혈통으로 대를 잇고, 자녀는 남편집안의 혈연으로 생각하며, 시집중심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남성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연령과 성에 따라서 위계질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보다는 남성이 존중을 더 받으며, 우월한 위치를 가집니다.

- 연장자우대사회 : 한국사회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예의를 갖춰 대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들은 부모님께 ' 안녕히 주무셨어요? ' 문안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 안녕히 주무세요 ' 라고 인사합니다. 부모님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일어나서 ' 다녀오세요 ', 집으로 돌아오면 ' 다녀오셨어요 ' 라고 인사를 합니다.
- 양성분리사회 : 한국사회는 커플중심의 문화라기보다는 동성끼리 어울리는 사회입니다. 명절이나 잔치집에 가면 남녀가 섞여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은 따로 모여서 노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성들끼리 손을 잡고 걷거나, 화장실에 함께 가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 가정주부 : 한국사회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다르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하기보다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성을 가정주부라고 부릅니다.
- 아줌마 : 보통 결혼한 여성을 통칭하여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줌마라는 말은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수퍼마켓에서 종업원들이 " 아줌마 ", 또는 " 주부님 "이라고 부르면, " 손님 " 또는 " 고객 "으로 부르라고 말하세요.
- 문화적 경향 :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유교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나, 서구화되는 경향이 큽니다.
- 분단국가 : 한국사회는 1945년, 세계냉전의 흐름에서 남한과 북

한으로 분단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반공주의 사상이 강하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 위급할 때 연락처 : 화재나 응급시에는 119, 강도를 당했을 때, 폭력을 당했을 때 112, 성폭력을 당했을 때 1366으로 전화하세요. 성매매 신고는 117입니다. 이주여성들을 위한 시민단체 연락처는 91쪽을 참조하세요.

3. 이주여성들이 갸우뚱하는 일곱 가지

: 한국가족과 성문화 이게 궁금해요

이것은 한국문화야,
한국여자들은 다 그렇게 해" 라는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비록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것이 여성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냐, 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국문화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 나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딸린 가족이?

"나는 한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가족과 결혼했어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나 피곤해요. 그래도 남편에게 하듯이, 남편가족들에게 시중을 들어야했어요. 한번은 남편에게 왜 내가 모든 가족을 부양해야하는지 물어보았어요." (32세 여성)

"나는 남편의 시중만이 아니라 시집 식구들의 시중도 들어야했어요. 집을 청소하고 가족 전체의 음식과 빨래를 다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한국여자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여자들은 모두 그런 일을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세 여성)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여성이 남편의 호적에 이름이 올려지고 (2005년 호주제가 국회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남편의 거주지에 살면서, 남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식은 남편의 성을 따르고 남편이 집안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지요.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하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면, 남편의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라고 여겨왔습니다. 친정보다는 시집이 더 우선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집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는 것과 무리한 노동은 구분되어야합니다. 만약 남편이 " 한국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면, " 난 아내야. 기계가 아냐! " 라고 말하세요. 한국여성들도 시집식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명절 때 혼자서 많은 일을 하기에 명절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들은 " 웃어라 명절! 남성들이여 설거지부터 하자! " 라는 가사분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집식구 뿐만 아니라 친정가족들도 존중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Tip 남녀는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한다.

(여성가족부, '21세기 남녀평등 헌장' 에서)

2) 무뚝뚝한 이 남자, 한국남자는 다 그런가요?

"남편은 결혼 전에 국제전화를 자주 했어요. 보고 싶다고, 빨리 결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남자라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막상 결혼하니 이전의 그런 다정한 모습은 없어요. 말도 별로 없어요." (28세 여성)

남성들이 연애할 때와 달리, 결혼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남성들은 " 내 여자 "가 되면 구애할 때와는 달리 적극성을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사랑과 결혼을 마치 " 여성을 갖는다 "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내 여자가 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남성다움과 연관이 됩니다.

30 40대 기혼 남성들이 생각하는 남성다운 행동은 ①울지 않는다 ②무게가 있다 ③입이 무겁다 ④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 ⑤대를 잇는다 ⑥아기 돌보지 않는다 ⑦군대간다 ⑧출세하거나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남성성을 과장하고픈 남성들은 다정하기 보다는 무게를 잡구요, 요리나 설거지, 청소와 같은 집안일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며 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남성적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고, 폭력을 통해서라도 순종하기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남성일수록 말입니다.

한국남성들 많이 무뚝뚝하지요? 말없는 남자, 다정다감하지 않는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냥 ' 사랑으로 극복하자 ' 라고 막연히 넘겨짚지 말고, 꼭 물어보세요. 남편에게도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고, 몸짓으로 얘기해보세요. 몸짓도 주요한 대화랍니다. 한국말이 아직 서투르면, 사전을 활용해보세요.

3) 남편은 하늘이래요.

"한국남자들이 마치 왕처럼 대접받는다는 점을 몰랐다. 한국남자들은 특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항상 시중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남편에게 쉽게 적응할 수 없었다. 하루종일 집안일에 지쳐 있을 때도 남편은 항상 내가 요리를 하고 식사시중 하기를 원했다."

(22세 여성)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성일수록, 남성은 남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일수록 가사노동을 하지 않거나 자녀양육에 소홀합니다.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선호하고 아들과 딸을 차별적으로 키우는 부모일수록 남성의 역할(가장, 바깥일)과 여성의 역할(가사노동, 자녀양육)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편은 하늘처럼 귀하고 받드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남성들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동등하게 일합니다. 오히려 여성의 힘이 강합니다. 한국여성들은 시중들기를 원하고 혼자서 밥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아이 하나 더 키운다고요. 돌봐줘야 할 큰 아이라구요.

이제, 한국여성들도 여성의 일, 남성의 일을 구분하지 않으려 합니다. 남성들에게 집안일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남

성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부부,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아이를 키웁니다. 남편의 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기도 살리기 위한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Tip 평등부부는,

1. 중요한 가정 문제는 의논해서 결정한다.
2. 부부간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3. 재산은 부부가 공유한다.
4. 자녀양육은 부부공동 책임이다.
5.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
6. 처가와 시댁을 똑같이 대우한다.
7. 가사는 분담한다.
8. 휴식은 함께 한다.
9.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10.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인천여성의 전화, '안드로지니'에서 인용)

4)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들어요.

"남편은 잘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28세 여성)

"우리는 주로 시어머니 문제로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시어머니 편을 듭니다. 내 설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30세 여성)

남편은 '효'라는 이름으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시어머니의 말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내가 아닌", 시어머니와 결혼한 것 같지요. 심지어 어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격을 띠는 가족일수록 어머니는 며느리와 삼각관계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가족들 간의 관계가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 삼각관계는 쉽게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정 안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머니는 아들과 삼각관계를 만들고, 며느리를 소외시키거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선호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의 밀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평등하지 않는 가정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자식, 특히 아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존해있을 경우, 남편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효'라는 명분 아래 어머니의 치마폭에 싸이기 쉽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은 엄밀히 보면, 남성중심 사회에서 약자인 두 여성이 갖는 대립입니다. 이럴 경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가족관계를 평등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외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갈등관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상담소로 연락하세요.

Tip **상담소 연락처**

기독교여성상담소 02) 2266-8275(전화상담) 02) 365-4278(면담예약)
열린가족상담센터 02) 830-1816
이주여성지원단체(91쪽 참고)

(5) 나도 가족인데…

"시어머니는 주변사람들에게 날 OO며느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피한 거죠." (27세 여성)

"남편은 내 머리를 보고 촌스럽다면서 OO사람같다고 말해요."

(32세 여성)

"남편은 결혼하기 위해 중매업체에게 큰 돈을 지불했기에,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나는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돈은 도로 갚아야한다고 말해요." (23세 여성)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나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차별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것 중의 하나가 인종이나 민족입니다. 특히 일부 한국사람들은 혈연중심의 우리민족주의가 강해서 외국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하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각 나라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이해 없이, "OO나라 사람들은 게을러", "더러워, 일 못해"라고 단정

하는 것은 고쳐야할 편견이자 선입견입니다.

국제결혼한 여성들은 시집가족들이나 남편에게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표정에서나 한마디 내뱉는 말에서 외국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호나 습관, 문화가 한국문화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의 선호나 문화는 그냥 차이일 뿐입니다. 경제적 차이나 인종적 차이, 민족적 차이가 문화적 차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집 가족들이나 남편이 자신을 무시할 때, 그 느낌을 직접 말하도록 노력해보세요. '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해요 ', ' 자존심이 상해요 ', ' 불쾌해요 ' 등 자신의 느낌을 말하세요. 그리고 ' 이건 오해인 것 같아요 ', ' 그건 이러이러한 일로 그렇게 된 거예요 ' 라고 설명도 해보세요. 비록 처음에는 가족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에 대해서 계속 표현한다면 점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질 거예요.

Tip **자녀가 차별받을 때는 이렇게 합시다.**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폐쇄성과 편견은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차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을 "혼혈아"라는 이름으로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이들이 생김새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을 당해 상처를 받으면 자녀에게 "놀리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세요. 엄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당당해집니다.

6) 섹스는 대화, 여자도 느껴요.

"남편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럴때면 내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때렸다.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더 심했다. 한번은 생리중이었기에 섹스를 거부했지만, 남편은 강제로 했다. 강제로 여러 가지 자세를 요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 (21세 여성)

결혼이란 부부가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성관계를 원하면 당연히 응해주는 것이 아내의 의무라고 오인합니다. 아내는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사이에는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내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남편이 성관계를 강제로 한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부부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부부강간에 대한 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 별거한 부부사이에 일어난 강제적인 성관계를 법원이 강간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포르노적 상상력을 갖습니다. 여성들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남성적으로 강하게 나가면 좋아하리라고 생각합

니다. 물론 이것은 남성들의 착각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남성 멋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남성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도 성적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성적 쾌락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여성의 행복추구권입니다. 그러니 원하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세요,"노". 자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원하는 자유와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 평등한 부부관계일 때, 성생활도 즐겁다.
2. 서로 돌봐주고, 보살필 때, 성적 쾌감을 위한 방법을 쉽게 발견한다.
3.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발하라. 잡지에서 말하는 남의 이론에 솔깃하지 말자.
4. 몸을 건강하게 돌보자. 건강한 몸이 성의 기쁨을 더해준다.
5. 서로 느낌을 표현하라. 사랑의 언어와 고마움의 언어를 아끼지 말자.
6. 서로 생활의 리듬을 존중하자. 피곤한 시간은 피하고, 일방적인 성행위는 하지 말자. 폭음했을 때도 피하자. 최상의 섹스를 위하여.

7) 술 나빠요! 남편은 술을 사랑해요.

"남편은 정기적으로 술을 마셨고, 그럴 때면 때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편의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듯 했다." (33세 여성)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그만큼 일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술 문화는 유별납니다. 술을 잘 먹어야 남자답고, 남성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사업거래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남성간의 연대감을 높이며, 남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오락이자, 감정을 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남성들은 어떤 일을 위해 술에 의존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 술은 단순히 남성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하나의 기호품이 아니라, 남성들의 일반화된 사회문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술을 지나치게 먹는 것을 이해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술을 통제할 수 없는 남편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술의 힘을 입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술과 폭력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혹, 남편이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세요. ' 술 때문이겠지 라고 남편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의 폭력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잠깐!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한국사회에서는 가족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개인적인 일이거나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힘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범죄행위이며, 도덕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폭력적인 태도와 행동을 비폭력적인 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폭력도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사랑의 매라든지, 교육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핑계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타할 수 없습니다.

(1) 사람과 소통하는 법

① 폭력은 버리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은 이미 대화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욕도 하지 맙시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은 그만큼 자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② 듣기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면 꼭 확인하세요. 한국말을 잘 못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 봅시다. 몸짓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사전도 이용해 보세요.

③ 감정은 솔직히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감정을 서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감정을 억누르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쉽게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2)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상하는 법

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합시다.

②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합시다. 말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내 느낌, 생각, 의견을 말하도록 합시다.

③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맙시다. 두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와 사람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두 사람에게 이익인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④ 자신의 것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남편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편의 것을 다 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3) 구타당할 때, 대응법

① 일단 피하라.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이 구타하면, 우선, 안전이 중요합니다. 폭력을 피해야겠지요. 집 밖으로 나오세요.

② 도움을 요청하라.

경찰에 신고하고 여성단체에 전화를 하세요. 친구나 이웃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6쪽을 참조하세요.

③ 직접적 행동으로 저항한다.

우선, ' 때리지 말라 '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구타가 계속되면 ' 신고하겠다 '고 말하세요. 그리고 구타 시, 맞은 정도를 증거자료로 남기세요. 사진을 찍어도 좋고, 병원진단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어적 폭력이 있으면 녹음도 하세요. 이러한 행위가 가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④ 대처방법을 미리 생각한다.

위의 대응방법들은 갑자기 실행되지 않습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 폭력적인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평소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으로 옮겨봅시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돈과 여권은 평소에 챙겨둡시다.

4. 내 삶은 내가 : 한국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

한국은 낯선 곳입니다. 내가 살던 곳과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곳입니다. 이러한 다름은 다른 사람과 경계를 갖게 하고, 때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름은 서로를 서먹하게 하거나,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없는 것을 채워주는 자원이 됩니다. 내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다름은 싸움의 근원이 아니라, 행복의 꽃씨입니다.

다름을 수용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이 먼저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

니다.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에는 한국남편과 시집식구들의 무지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편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며, 내가 스스로 풀어간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 7가지를 볼까요?

이 여자가 한국에서 당당하게 사는 법

하나. 나는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갖는다.
둘. 나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
셋. 나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싸운다.
넷. 새로운 것에 위축되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부한다.
다섯. 유연하고 개방적인 여성이 된다.
여섯. 친구를 많이 사귄다.
일곱. 여성단체의 연락처를 하나 이상은 알아둔다.

II 알면, 안전해요

1. 국제결혼과 체류

Q1.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 받나요?

한국인과 결혼해 90일짜리 거주(F-2-1)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체류연장 신청과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90일 이내에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Tip 외국인등록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① 외국인등록신청서+체류연장신청서(동일 서식)
② 여권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③ 배우자 호적등본
④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⑤ 신원보증서(공증 불요)
⑥ 수수료 3만원(외국인등록:1만원, 체류기간 연장: 2만원)

Q2.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혼인생활 중 출생자녀가 있으면 한국인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체류연장 신청 구비서류

① 체류기간연장신청서(서식)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배우자 호적등본
④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공증 불요)
⑥ 수수료 2만원

Q3. 신원보증은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가 해야 하나요?

법무부는 체류연장 허가 시 ' 혼인의 계속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 배우자의 호적등본 ', ' 신원보증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원보증인을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친척 등으로 제한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 없이는 체류연장 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5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혼인생활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원보증인의 대상을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Q4. 외국인 배우자(F-2-1)가 일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05년 9월 25일 이전까지는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를 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 25일부터는 법이 바뀌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주소지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체류주소지 관할 이외의 곳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청을 한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Q5. 이사를 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체류지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이사한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Q6.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F-5)자격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전에는 국민의 배우자가 영주(F-5)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해야 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8의 3)의 개정으로 체류기간이 줄어들어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자격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ip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자격부여허가신청서
③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④ 재산관계 입증서류(다음 중 1가지)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신원보증서
⑥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Q7.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한국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도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를 희망한다면 체류가 허가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국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체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거주(F-2)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하게 된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그외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권을 갖는 경우

③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는 경우

위에 열거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더 이상 한국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2. 국제결혼과 국적

Q 8.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나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②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 1년 이상 한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때 혼인은 법률상 혼인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신고 후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심사에만 합격하면 됩니다. 귀화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를 마친 후 면접심사 통지를 합니다.

Q 9.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산 경우에도 귀화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과 ' 법률상 유효한 혼인절차 '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만이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이하 혼인귀화라 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동거중인 외국인은 혼인귀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절차를 마친 자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정하

는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에 결혼사실이 표시된 자를 뜻합니다.

한국인과 단순히 동거 중에 있는 외국인은 혼인귀화 대상이 아니라 일반귀화 대상에 해당되며, 이런 사람은 국적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Tip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서식/반명함판사진 1매)
②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③ 출입국 사실증명 1통
④ 결혼증서(혼인거행지법이 결혼증서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⑤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다음 중 1가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사본

⑥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⑦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10만원 지참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

Q 10.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 재직증명서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첨부) 등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나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11.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시작하나요?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 결혼공증서 상의 결혼일이 혼인한 날이 됩니다. 만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외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날이 혼인한 날이 됩니다.

거주기간의 시작점은 한국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그날로부터 2년간 계속하여 적법하게 체류해야 합니다.

Q 12.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살다가 잠시 출국하면 귀화에 필요한 국내 거주기간이 중단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국내 체류 도중에 출국하면 국내 거주기간이 중

단되어 재입국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출국 후 재입국 허가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와 같이 출국한 전후의 국내거주 및 생계유지 형태에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봐서 출국한 전후의 국내 체류기간 전부를 합산합니다.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요건 조사와 귀화적격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13.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면 국적취득이 더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어도 법률상 혼인한 상태로 국내 거주기간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만 국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귀화허가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Q 14.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호적신고 : 귀화허가 통지서를 가지고 호적관서에 직접 가서 귀화신고를 하고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외국 국적포기 :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적 국가의 대사관에 가서 ' 국적 포기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 6개월 내 '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③ 외국 국적포기확인서 :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를 직접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제출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우편이나 전산으로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④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 호적등본 '과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를 가지고 주민등록관서에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Q 15. 귀화허가를 받고 호적까지 만들었으나 6개월 안에 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없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실했던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Tip **국적 재취득을 위한 제출서류**

① 국적취득신고서
② 호적등본
③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④ 수수료 : 1만원(인지 첨부)

Q 16.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 이후,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과 이혼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 남자와 혼인 후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남편과 이혼하거나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국제결혼과 기타

Q 17. 한국인과 결혼한 후 결혼 전에 출생한 본국의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① 한국인 배우자가 그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
본국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인 남편이 그

자녀를 입양하고, 그 자녀가 국내에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양은 ' 입양신고서 '를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입양절차가 끝나면 자녀를 국내로 입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후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성년이 된 후 입양된 자는 한국에서 3년을 거주한 후 국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이 국적 신청을 할 때 자녀의 국적 신청을 함께 하는 방법

본인의 국적 신청을 할 때, 동시에 자녀의 국적 신청을 합니다. 1)본국의 자녀는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만 20세 미만) 2)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신청서 중 수반취득 관계란에 수반 취득할 뜻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귀화 신청자와 수반취득 신청자간에 친자관계가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받을 때 수반취득 신청자도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Tip **입양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 구비 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②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출석 시 본인 지참)
③ 출입국 사실증명 1통
④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다음 중 1가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양부 또는 양모의 호적등본 1통(신청인의 입양사실이 기재된 것)
⑥ 양부 또는 양모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⑦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⑧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10만원 지참
※ 양친이 양자를 데리고 와서 신청하여야 함

4. 이혼 시 체류 국적 문제

Q 18.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가출신고를 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받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출신고만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Q 19. 이혼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연장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송 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혼소송을 위하여 체류연장 신청 시 기타(G-1)자격, 방문(F-1)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줘 이주여성은 일을 할 수가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이혼소송 중 체류연장을 신청하더라도 거주(F-2)자격을 허가하되 소송이 끝날 때까지 3개월씩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②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출입국 사무소 구비) ③소송제기증명원(소 제기한 법원에서 발급 신청) 및 소장 사본 ④신원보증서 ⑤수수료(수입인지 5만원)입니다.

Q 20.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혼인에 기한 혼인귀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때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부터 귀화허가 신청할 때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귀화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혼인귀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일반귀화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게 되면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21. 소송으로 이혼한 경우 국적취득이 가능한가요?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종료된 경우 또는 그 혼인에 기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양육하여야 할 경우 포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22.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조정 결정문에 이혼한다는 내용 이외에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이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다는 내

용만 조정 결정문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국적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이 중단된 경우 국적 취득 방법

1. 기본 서류
   ① 귀화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
   ② 신청인의 여권사본(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상관없음)
   ③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④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제적)등본 1통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생략가능)
   ⑥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다음 중 1가지)
      • 신청인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동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본인이나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의3 •
      • 신청 / 청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다음 중 1개 이상) :
  ①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②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③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④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⑤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⑥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⑦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⑧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3)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① 자녀의 호적등본
②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이때는 한국인 배우자 본인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본인 진술서에 설명하고, 법무부 법무과에서 직접 접수함

Q 23.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이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판결이 나온 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이유와 그외 잘못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송통지가 도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 등의 사유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법원에 이야기해서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을 나간 외국인 배우자에게 소송통지가 가지 않더라도 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한국인 배우자의 참석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한국인 배우자가 청구한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 이혼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혼판결이 난 후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다시 재개하여 귀책사유 유무와 위자료 등을 다투고자 한다면 ' 추완항소 '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혼판결문을 열람, 등사한 날을 기준으로 2주일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뒤집거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추완항소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니,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Q 24.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지도 못하였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한국인 배우자가 갖게 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그 자녀를 면접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이 부여되나요?

법무부는 2005년 9월 25일부터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이혼을 하거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도 생모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거주(F - 2) 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만약 이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때에는 인터넷에서 법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주요정책' → '국적업무마당'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http://www.moj.go.kr/)

관련 국적법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녀의 국적취득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수반취득)

①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심사 절차

1. 귀화신청자격조사

   귀화신청자격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서류심사와 경찰의 신원조회, 출입국사무소의 체류동향조사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2.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가 있으나, 한국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

게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면접심사 일정이 결정되면 심사일 2~4주전에 법무부의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따라서 주소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법무부 법무과로 통보해야합니다.

심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추가로 2회 더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총 3회 심사에서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국적취득을 계속 원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으로 3회 불참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아니, 이런 법도!!

1. 가정폭력 대처방안

1) 가정폭력,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Q1. 구타, 폭언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도 처벌할 수 있나요?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범죄의 경우 가족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로 취급되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한국은 이러한 범죄도 처벌하고 피해자를 ' 적절히 '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Q2. 피해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한국에서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라면 피해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한국 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주저 말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십시오.

Q3. 경찰에 신고하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경찰에 신고만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따라서는 처벌을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것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상담소 같은 곳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검사와 판사가 사건의 성질,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성향 등을 심사한 후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바로 처벌 받을까봐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가해자를 신고한 후에 형사처벌을 취소하고 싶으면,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탄원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Tip

"가정보호사건" 이란?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일반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와 달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법원은 일반폭력범죄처럼 징역이나 벌금의 형을 내리는 대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가해자로 하여금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거나, 가해자를 일정 기관에 가정폭력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 취소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이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속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다만 나중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할 때 고소 취소된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 필요하다면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다시 고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가해자가 처벌되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Q4.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가서 ①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수사에 착수하고, ②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③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④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날 경우 법에 의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가능한 한 112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임시조치'란 무엇인가요?

'임시조치'란 나중에 법원이 필요에 따라 가해자로 하여금 ①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곳에서 나가도록 하거나, ②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③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④경찰관서 유치장 등에 가둬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까봐 걱정될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Q 6. 가정폭력 신고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법에 따르면 ' 자기 또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우자 또는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폭력/폭언/학대/모욕 등)의 정도가 심하여 ' 매우 부당한 대우 '에 해당될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① 사위가 장모를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거나[1] 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행위[2]

② 한밤중에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아내의 목을 밟고 때리자 아내는 가출하여 산에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남편이 아내를 업고 집으로 온 경우

③ 남편이 아내에게 " 너, 이년 나가라 "고 욕설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내쫓은 행위[4]

④ 정숙한 아내라서 그 아내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어서 이혼청구를 하고[5] 나아가 제3자에게

1) 대법원 1958. 10. 16. 선고 4290민상828 판결
2) 대법원 1947. 5. 6. 선고 4280민상37 판결
3) 대법원 1958. 10. 16. 4290민상828 판결

거짓증언을 부탁한 경우[6]

⑤ 처가 조금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시아버지와 합세하여 강제로 내쫓은 사례로, 시아버지는 평소 술만 마시면 며느리에게 ' 친정으로 가라 '는 폭언을 일삼고, 남편은 밧줄로 아내의 몸전체를 묶어놓고 ' 너 000와 간통했지? 자백하라 '고 강요하자, 아내는 하도 억울하여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려고 기도하였고 남편은 끝내 아내를 그 친정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여 내쫓은 경우[7]

⑥ 혼인 전 애인을 못 잊어 7년간 아무 이유없이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아내로 하여금 10여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경우[8]

⑦ 남편이 혼인 초부터 아내에게 '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고 트집잡아 학대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 '고 협박하고 실제로 2회에 걸쳐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이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아내가 친정으로 간 경우[9]

⑧ 남편이 아내에게 ' 시집올 때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

4) 대법원 1961. 3. 23. 선고 4293민상101 판결
5) 대법원1966. 1. 13. 선고 65므56,57 판결
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7)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491 판결

였다 ’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아내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장인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10] 등이 이혼판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하여 관련 증거나 증인을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Tip 가정폭력사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들

- 병원진단서, 병원진료기록
- 몸에 생긴 상처나 부서진 가구의 사진
- 폭언이나 폭행현장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
- 목격자의 진술, 112 신고 확인원
-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자료 등

2) 가정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Q7. 남편이나 시부모가 자꾸 때렸어요.

현재 폭행이 가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는 본인의 안

1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진행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일입니다.

멍이 들거나 피가 나는 등 외관상 명백한 상처가 있을 경우는 물론이고 상처가 있지 않더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가서 다치거나 아프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멍이 든 곳이나 상처가 생기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폭행현장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Q8. 남편이나 시부모가 자꾸 욕설을 퍼붓고 저나 친정을 모욕해요.

남편이나 시부모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이는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녹음해 두거나 아니면 이를 들은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사는 곳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증인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시부모가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욕설이나 모욕을 한 가족을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녹음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9. 남편이나 시부모가 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즉,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감금 '의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됩니다.

그러나 집 주변에 장을 보러간다든가 가벼운 산책을 다니는 것 정도는 허용하지만 밖에 나가 친구나 친척을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범죄에 해당할지 여부가 다소 분명치 않습니다. 이때는 위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남편이나 시부모가 폭언, 폭행을 행사하면 112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Q 10. 남편이나 시부모가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 경우 갈 곳이 없다고 집 밖에서 그대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경찰(112 전화)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및 관련 쉼터 등에 연락을 해서 보호를 요청합니다.

Q 11. 제가 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나 시부모가 경찰에 가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출신고를 그대로 둘 경우 남편이 나중에 혼자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집을 나간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가출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남편이 부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출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연락하여 가출수배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Tip 가출수배가 되었는지 아는 방법

- 국번없이 182로 전화를 걸어 안내원에게 가출신고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 안내원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신고 여부를 알려줍니다.
- 안내원에게 가출수배해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Tip 가출수배 해제방법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혹은 생활안전계에 찾아가 가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수배해제를 요청합니다(관련 연락처 96쪽).
- 경찰서에 찾아가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여 가출신고 해제를 요청합니다.
-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가출수배 해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관련 연락처 91쪽).

Q12. 남편이나 시부모를 고소하거나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나요?

지금 당장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도 남편이나 시부모가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이혼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성폭력 대처방안

1) 성폭력,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Q13. 한국에서는 어떤 성폭력범죄가 처벌을 받나요?

(1) 아래에 명시된 범죄는 모두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경우:
扶강간이나 강제추행(잠자고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도 포함)
扶고용주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속이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扶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扶버스나 지하철 또는 공연집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예컨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거나 자신의 성기를 고의로 밀착시켜 부비는 등의 행위)을 한 경우

扶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체의 성적인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②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扶강도범이 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

扶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 강제추행한 경우

扶흉기로 위협하여 강간 강제추행한 경우

扶2인 이상이 함께 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

扶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한 경우

扶강간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죽인 경우

(2) 다만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직원들이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물건을 게시(여성의 누드사진 등)하거나 가벼운 성적 접촉(엉덩이를 살짝 만진다거나 업무를 가르쳐준다며 어깨를 감싸안는 등)을 하여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행위자를 징계하도록(경고를 하거나 월급을 깎거나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위(1)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됩니다.

Q 14.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한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 범죄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아니면 직접 성폭력범죄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Q 15.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소가 필요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하면 됩니다. 참고로, 고소가 필요한 다른 범죄(성폭력범죄가 아닌)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Q 16. 시아버지도 고소할 수 있나요?

예,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이들을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범죄는 예외입니다.

Q 17.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요.

경찰이나 검사가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을 지정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신뢰할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Q 18. 한국을 당장 떠나고 싶은데,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꼭 증언을 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에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별로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려 그때 증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검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증인신문을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Q 19.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 되나요?

현재 한국 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해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법에 부부강간죄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부부 간에 강간도 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는 남편의 강간이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등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의 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Q 20. 시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폭행협박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적인 성적접촉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1. 남편이 아닌 사람이 저를 강간했어요.[11]

남편이 아닌 사람이 폭행협박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다면, 먼저 가족이나 친지 등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당장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성폭력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가해자를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금전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성폭력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는 증거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증거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적절한 대응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터넷 홈페이지 내 〈성폭력 예방과 대처〉 중 '대응방법'에서 일부 변경인용

Tip **입증자료 확보방법**

- 일단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검사를 받아 정액이나 가해자의 음모 등을 채취하도록 합니다(어쩔 수 없이 샤워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비닐봉투 등에 보관하면 옷가지 등에 묻은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꼭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경우에 따라 임신방지 처방이나 성병검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목소리나 인상착의 등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십시오.

잠깐만!

그런데 어떤 병원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증거채취, 진단서 발급 등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때는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연락해서 병원 안내를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면 반드시 성폭력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입증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Q 22.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직원이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으로 저를 불쾌하게 해요.

이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알려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전문상담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농담이나 행동을 한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성매매 대처방안

1) 성매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23.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니까 중개업자가 성매매업소를 소개해줬어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해지는 것을 알고도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사람,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사람, 인계받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Q 24. 룸싸롱이나 술집, 마사지업소에 취직했는데 그 곳 업주나 마담이 2차 성매매를 강요해요.

2차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나 마담는 경우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25. 소개업자 또는 업주가 제가 그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선불금채무를 구실로 저를 다른 업소로 넘겼어요.

이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나 그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받아 보관함으로써 여성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성매매업소 등으로 넘길 경우 이 역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26. 룸싸롱이나 술집, 성매매업소에서 업주나 마담 등으로부터 폭행, 폭언, 감금을 당했어요.

경우에 따라 폭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감금 등에 상응하는 한국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이렇게 대응하세요.

Q 27. 위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그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강요할 경우에는 성매매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Tip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들

①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진술
② 병원 진단서
③ 녹음
④ 선불금 차용증이나 장부 등 약간의 관련성이라도 있는 증거 등 나중에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증거를 하나도 얻을 수 없더라도, 일단 성매매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해결책을 함께 상의할 것을 추천합니다.

Tip 관련기관 연락처

다시함께센터 02-814-3660
막달레나의 집 02-704-8382
새움터 031-867-4655
두레방 031-841-2609

Q 28. 업주를 고소하면 성매매행위를 한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성매매행위를 한 자도 처벌받도록 되어있으나, 그 여성이 ' 성매매피해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 29. 지금 저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불법체류상태인데, 업주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즉시 추방되나요?

법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

Q 30. 성매매업주나 소개업자 등으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매매업주나 소개업자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폭행 폭언 감금을 당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상대로 금전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매매업주나 소개업자 등이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해서 여성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성매매업주나 소개업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여성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 채무, 이렇게 해결하세요.

Q 30. 성매매업소에 취직할 때 선불금을 받았는데, 업소를 그만 두려고 하니까 채무를 갚으래요.

앞서 소개한 여러 유형들, 즉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등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입니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업주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면서 괴롭힐 경우에는 업주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 채무에 성매매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성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증거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Q 32. 선불금을 받기는 했는데, 업주가 아니라 다른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가 직접 돈을 빌리고 업주나 소개업자가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받았어요. 이 채무는 갚아야 하나요?

위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이 위 차용금이 성매매여성에게 선불금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채권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두 여성 쪽에서 입증해야 하나, 실제로 위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어,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33. 업주가 시켜서 같은 업소 성매매여성 A의 선불금채무에 보증을 섰는데, A가 달아나자 업주가 제게 갚으래요.

위 업주의 A에 대한 선불금 채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효이며, 주 채무가 무효인 이상 보증채무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며 괴롭힌다면 업주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사실을 모두 여성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34. 업주가 성매매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 이는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거나 전문상담기관과 상의해보기 바랍니다. 업주를 상대로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거나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상 소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 건강의료보험

Q1.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으면 외국인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남편과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직장 가입과 지역 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직장에서 가입신청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주거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Tip 필요한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여권
② 재산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금명세서, 소득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전월세계약서 등

Tip 공단지역본부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자격팀	02) 2126-8862~6	대표전화 02) 2126-8999
경인지역본부 자격팀	031)230-7881 4	대표전화 031) 230-7840~5
대구지역본부 자격팀	053)650-8870	대표전화 053) 650-8900
광주지역본부 자격팀	062)250-5551	대표전화 062) 250-5650
대전지역본부 자격팀	042)605-7141~3	대표전화 042)605-7100
부산지역본부 자격팀	051)801-0561-4	

Q3. 건강보험에 가입 후 탈퇴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아무 때나 탈퇴할 수 없습니다. 탈퇴가 인정되는 경우는 체류목적 완료 후 본국으로 출국한 다음날(일시출국제외), 사망한 다음날,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거나 피부양자로 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의료보험카드가 없어서 비싼 수술비로 인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2005년 5월 19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여성도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무료진료소 혹은 보건소, 동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하세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혹은,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십자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안내합니다. 가까운 곳에 적십자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이 있으면 직접 찾아 가서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2. 모자보건 & 보육 사업

Q5.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됐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첫 아기라 어떻게 돌봐야 할 지 막막합니다. 산부와 신생아를 돌봐줄 곳이 있나요?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관리 등 모자보건사업이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무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보건소마다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임신 후 바로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지원(서울 성북구 보건소의 예)

접종명	접종기간	접종시기	접종대상	접종비
BCG	연중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영유아	무료
디피티	연중	기본접종–2, 4, 6개월 각1회 접종 추가접종–18개월, 만4~6세때 각1회 접종		무료
폴리오	연중	기본접종–2, 4, 6~18개월 각1회 접종 추가접종–만 4~6세 1회 접종		무료
B형간염	연중	생후 0, 1, 6개월 각1회 접종		무료
MMR	연중	기본접종–생후 12~15개월 1회 접종 추가접종–만 4~6세 1회 접종		무료
일본뇌염	연중	기본접종–생후12~24개월에 1차접종 –1차접종 후 1~2주 이내에 2차접종		36개월 이상 유료 (2,850원)

접종명	접종 기간	접종시기	접종 대상	접종비
일본뇌염	연중	-2차접종 후 12개월 후에 3차접종 추가접종-만6세, 만12세에 각1회 접종		
수두	연중	생후 12~15개월	셋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무료
TD	연중	만11~12세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Q 6.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는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4계층으로 나뉘는데 식구가 몇 명이고, 식구의 수입을 모두 합쳐 얼마냐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80, 60, 30%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입을 합해 아래 표에 제시한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상의하십시오.

2005년 기준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층	109만원 이하	136만원 이하	156만원 이하	177만원 이하
	3층	150만원 이하	170만원 이하	190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4층	184만원 이하	204만원 이하	224만원 이하	244만원 이하
	만5세아	252만원 이하	272만원 이하	292만원 이하	312만원 이하
	두자녀	320만원 이하	340만원 이하	360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Tip **보육료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동사무소비치)
② 건강보험증 및 영수납입증명서
③ 소득인정액 증명서

잠깐만!

- 가족수입을 계산할 때 외국인배우자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에 제시한 표는 2005년 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알아보세요.

Q7. 소득인정액이란 뭔가요?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가족의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과 재산을 포함합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지는 월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Q 8.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에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인 배우자가 수입이 없으면 한국인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9. 소득인정액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 재산확인, 노동능력 여부, 생계급여조건부과결정 여부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확인을 위해서는

扶월급명세서(3개월치), 고용임금확인서(노동자의 경우), 소득신고서(자영업자의 경우)

扶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는 세무서 발행)

扶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회사 발생)

扶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② 재산확인을 위해서는

扶임대차계약서(전세 혹은 월세계약서) 사본

扶무료임대확인서

扶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③ 노동능력 판정을 위해서
扶진단서 또는 소견서
扶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
④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해서
扶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3. 모성보호 & 고용보험

Q 10. 출산 후 얼마나 쉴 수 있나요?

한국에는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여성이 아기를 갖게 되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까지 산전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쉬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1항). 또, 산전산후 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2항).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휴가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11. 노동자면 모두 산전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물론이고 식당이나 제조업체등 일

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매일 일하는 경우에도 산전산후 휴가를 요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12.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을 하고 싶은 시기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세요. 육아휴직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Q 13.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도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장해(4일 이상의 요양)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지급결정과 동시에 신청인 은행계좌로 즉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Tip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되어있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합니다(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음).
-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와 본인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간단히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문의전화는 060-708-7008 입니다.

Q 14. 회사 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았거나 해고를 당해 일을 못하고 있을 때 다시 일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 일부라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이 180일(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5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하기 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6 고용주가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며 2개월 이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상담소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분증을 가지고(외국인 등록증)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필증을 받습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합니다.
-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잠깐만!

-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전화는 1588-0075 입니다.

부록 : 전화번호 안내

이주여성활동단체

지역	단체명	연락처	지원내용
서울 (02)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02) 3672-7559	여성상담(가족, 부부, 법률, 의료, 생활), 모성보호, 긴급보호, 언어교육, 성교육 통(번)역지원 -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영어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한국어교육, 출산도우미파견
	한국교회여성연합 회부설외국인이주 여성노동자상담소	02) 708-4181	상담
	벗들의집	02) 929-5366	상담, 긴급보호, 귀국지원
	미리암이주여성 상담소	02) 747-2442	상담(인권, 심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강서양천 이주여성의집	02) 2699-9943	상담, 교육, 자녀교육 임신출산지원
경기 (031)	남양주이주노동자 여성센터	031) 595-0310	상담, 한국어교육, 쉼터, 놀이방 운영
	안양전진상복지관 부설위홈 (이주여성의 집)	031) 466-2876	긴급보호, 귀국지원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 지원, 언어, 컴퓨터 교육 통(번)역지원 - 영어, 베트남어
	안산 이주여성상담소	031) 492-8785	상담(국적, 노동, 법률), 쉼터 통(번)역지원 - 중국어, 영어

지역	단체명	연락처	지원내용
인천 (032)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부설 가족공동체 하늘마음	032) 576-8114	상담(법률, 노동), 쉼터, 의료공제 및 무료진료소,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문화사업
	인천여성의전화 -이주여성쉼터 '울랄라'	032) 529-2545	상담,숙식제공, 법률, 교육, 의료지원, 행정지원활동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 : 한국어교육, 출산도우미파견
	수녀들의 공동사목 국경없는 친구들	032) 345-6734	가정/개인상담, 쉼터운영 한국어교육
	천주교인천교구 조이하우스	032) 881-1094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요리강습, 가정상담
천안 (041)	모이세-이주여성 상담소	041) 556-2666	상담(노동, 국적), 쉼터, 무료진료
청주 (043)	충북 이주여성인권센터	043) 223-5253	상담 ,한국어학당 운영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한국어교육, 출산도우미 파견
부산 (051)	부산 이주여성인권센터	051) 505-2603	상담, 문화프로그램 제공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한국어교육, 출산도우미 파견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부설 어울림 (이주여성가족센터)	051) 802-3438	상담(법률, 생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및 배우자문화바로알기프로그램, 출산지원, 성교육 및 건강교육
	부산여성의전화	051) 817-4321	상담(법률,부부,여성), 쉼터, 가족강화프로그램, 상담원교육, 이주여성인식교육(한국문화체험/여행), 이주여성(매뉴얼발간)

지역	단체명	연락처	지원내용
울산 (052)	울산여성의전화	052) 246-6712	울산지역 이주여성실태조사 이주여성활동가교육
대구 (053)	대구여성의전화	053) 471-6482	이주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이주여성인권지원모임, 이주여성 상담
구미 (054)	카톨릭 근로자센터	054) 452-2314	상담(노동, 국적), 쉼터, 무료진료
창원 (055)	창원여성의전화	055) 266-3722	이주여성실태조사, 가정폭력매뉴얼 제작 국제결혼가정지원사업-한국어교육, 출산도우미 파견
전남 (061)	목포이주 외국인상담센터	061) 245-3130	상담(사회복리,가폭,성폭,노동) 및 관련 교육, 한국어교육, 노래교실, 문화체험 및 행사
	함평 새움터	(061) 323-4655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 및 긴급지원과 복지서비스제공
	영광여성의전화	061) 353-4994	한글공부방, 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체험, 생태평화기행
	나주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061) 331-0709	한국어교육, 상담, 취업알선, 문화강좌
	고흥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061) 833-3070	한국어교육, 친목교류
광주 (062)	가톨릭광주 사회복지회 외국인노동자사목	062) 230-9625	한국어교육, 상담
전북 (063)	전주여성의전화	063) 283-9855	이주여성들과 지역에서 함께 살기-우리문화읽히기/가족간의 이해하기/지원방법모색

지역	단체명	연락처	지원내용
전북 (063)	전북여성농민회	063) 253-1129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출산도우미 파견
	군산여성의전화	063) 445-2285	연변여성대상,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는 기혼여성실태조사, 한국사회문화체험, 집단상담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단체명	연락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02-3672-9472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031-878-6926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02-2282-7974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031-652-8855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서울)	02-863-6622
포천나눔의집 외국인노동자상담소	031-532-2025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02-749-8976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031-339-9133
용산나눔의집	02-718-9986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032-348-7575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02-2699-9943
아시아인권문화연대	032-684-0244
조선족복지선교센터	02-723-4823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032-664-6091
푸른시민연대	02-964-7530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032-874-3613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031-763-1004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032-576-8114

단체명	연락처
고양시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031-921-5006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41-541-9112
천안외국인교회부설 외국인노동자센터	041-565-5801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031-258-1671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042-621-8810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031-431-0134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042-631-6242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031-434-3383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043-534-6009
아시아의친구들	031-942-7882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051-492-8785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031-443-2876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051-802-3438
안양이주노동자의집	031-443-2876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051-803-9181
외국인노동자 샬롬의집	031-594-5821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053-811-7841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남)	031-756-2143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054-455-2816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안산)	031-495-2288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055-388-0988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광주)	031-768-5511
아시아노동인권센터	063-232-9119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양주)	031-837-4411

긴급전화안내

범죄신고	112	복지상담	129
전화번호안내	114	법률구조상담	132
성매매 신고	117	가출신고&수배해지	182
화재신고/응급	119	여성긴급전화	1366

가출신고 및 수배해지 담당기관

지역	기관명	여성 · 청소년계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여성 · 청소년계 연락처
서울 (02)	강남경찰서 생활안정과	02) 552-0016	강원 (033)	강원 지방경찰청	033) 256-0118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	02) 488-0182	충청남도 (042)	충남 지방경찰청	042) 254-0182
	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02) 2605-7955	충청북도 (043)	충북 지방경찰청	043) 252-7113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02) 3492-7065	부산 (051)	부산 지방경찰청	051) 851-5204
	구로경찰서	02) 867-0182	울산 (052)	울산 지방경찰청	052) 210-2148
	남부경찰서	02) 856-7000	대구 (053)	대구 지방경찰청	053) 765-0182
	동부경찰서	02) 457-0182		경북 지방경찰청	053) 958-0182
	성동경찰서	02) 2298-0118	경상남도 (055)	경남 지방경찰청	055) 284-3366
	영등포 경찰서	02) 2678-6406	전라남도 (061)	전남 지방경찰청	061) 222-4686
경기 (031)	경기 지방경찰청	031) 888-2348	전라북도 (063)	전북 지방경찰청	063) 280-8148
인천 (032)	인천 지방경찰청	032) 455-2148	제주 (064)	제주 지방경찰청	064) 747-0118

의료기관 & 알코올 상담센터

적십자병원

지역	전화(원무과)	지역	전화(원무과)
서울	02) 2002-8852	상주	054) 530-3107
대구	053) 252-4701	통영	055) 644-8901(교환 102)
인천	032) 280-2103	거창	055) 944-3251

지방공사의료원

지역	전화(원무과)	지역	전화(원무과)
서울	02) 430-0201	천안	041) 570-7200
부산	051) 507-3000	공주	041) 855-4111
대구	053) 560-7575	홍성	041) 630-6114
인천	032) 580-6000	서산	041) 661-6114
수원	031) 257-4141	군산	063) 472-5000
의정부	031) 828-5000	남원	063) 620-1114
안성	031) 674-7520	순천	061) 759-9114
이천	031) 635-2641	강진	061) 430-1114
금촌	031) 941-5811	목포	061) 260-6500
포천	031) 539-9114	포항	054) 247-0551
원주	033) 761-6911	안동	054) 858-8951
강릉	033) 646-6910	김천	054) 432-8901
속초	033) 632-6821	울진	054) 785-7015
영월	033) 370-9101	마산	055) 249-1000
삼척	033) 572-1141	진주	055) 745-8000
청주	043) 279-2300	제주	064) 720-2222
충주	043) 841-0114	서귀포	064) 730-3101

알코올상담센터

병원명	연락처
서울알코올상담센터	02) 719-0393
서울 까리따스 알코올상담센터	02) 521-2364
경기 수원알코올상담센터	031) 256-9478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	031) 751-2768
인천 알코올상담센터	032) 236-9477
강원 알코올상담센터	033) 748-5119
아산시알코올상담센터	041) 540-2585
대전 알코올상담센터	042) 527-9125
청주 알코올상담센터	043) 272-0067
부산 알코올상담센터	051) 246-7574
울산 알코올상담센터	052) 275-1117
대구 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053) 638-8778
포항 알코올상담센터	054) 277-4024
마산 알코올상담센터	055) 247-6994
진주 알코올상담센터	055) 742-7599
목포 알코올상담센터	061) 274-5694
광주 인광알코올상담센터	062) 222-5666
요한알코올상담센터	062) 526-3370
전북 알코올상담센터	063) 223-4567
제주 알코올상담센터	064)750-1234

2005년 12월 발행

발 행 인 : 한국염
발 행 처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68
전화 : 02-3672-8988

집필위원 : 김엘리, 소라미, 임선영
일러스트 : 강민정

인 쇄 처 : 누리미디어플러스
전화 : 02-2269-0425

※ 이 책은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